

建設委員會要求資料

(第99回臨時會議時)

建設都市局

목 차

I. (주) 동명기술공단현황	-----	126
II. '93지방도획·포장사업 설계변경내역	-----	127
III. 공원구역 재조정관계 정밀조사현황	-----	129
○ 3개공원 정밀조사		
○ 공원주변 주민의견		
○ 월악산국립공원 광역지정이유		
IV. 중앙고속도로건설	-----	135
V. 부실시공 방지대책	-----	138
○ 도로공사		
○ 하천공사		
VI. 설계, 감리비 인상내용 현황	-----	141
VII. 행정규제 완화사항	-----	142

I. (주) 동명기술공단 현황

□ 회사명 :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

□ 대표자 : 신 재 호 (申宰浩)

□ 주 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55 - 70

□ 설립년도 : 1960 년 10 월 1 일

□ 기술용역업등록분야 : 도로및공항, 도시계획 외 24 종

□ 기술자 보유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지역 및 도시계획 분야	도로 분야	상하수도 분야	측지 분야	토질기초 분야	구조 분야	환경 분야	조경 분야	교통 분야
계	382	83	75	35	36	29	82	13	16	13
특급기술자	47	11	9	4	2	5	8	2	3	3
고급기술자	48	12	8	6	4	5	7	2	2	2
중급기술자	112	25	24	8	6	7	29	4	5	4
초급기술자	144	30	30	14	9	8	38	5	6	4
기 능 사	31	5	4	3	15	4	-	-	-	-

□ 회사의 경영 실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총자산	자 기 자 본	유 등 부 채	고 정 부 채	유 등 자 산	당 기 순이익	매 출 원 가	매출액
금 액	23,083	10,382	9,964	2,735	17,462	2,212	78,386	89,351

※ 자기자본이익율 0.21 (737 / 3,461)

부 채 율 1.22 (4,233 / 3,461)

II. '93지방도확포장사업 설계변경내역

(단위: Km/백만원)

사 업 명		사 업 량		사 업 비		설 계 변경 사유 (구 체 지 으 로)
		당 초	변 경	당 초	변 경	
합 계		확42.6 포61.0	확43.5 포64.7	22,850	(870) 23,720	29건중 23건 변경 (79%)
4 차 산	소 계			2,853	(-) 2,853	
	두산 - 비원	보 상	보 상	1,481	1,481	설계변경 없음
	음성IC-오생	보 상	보 상	1,372	1,372	
2 차 선	소 계	확42.6 포61.0	확43.5 포64.7	19,997	(870) 20,867	
	현도 - 부강	포 3.5	포 3.5	320	(32) 352	-경부선 터널 횡단구간 CON'C포장 (대전철도청요청): L = 180 M
	육산 - 가좌	확 2.7 포 1.3	확 2.7 포 1.3	853	(23) 876	-추정암반선 변동:흙끼기:4,979m'중 -선택,보조기중 추가:8,003m'
	청주 - 비원	확 1.3 포 0.9	확 1.3 포 0.9	402	(-) 402	-도급계약 범위내에서 불량조정
	회북 - 회남	포 3.3	포 3.3	416	(28) 444	L형및 V형측구 추가: 993M
	회남 - 문의	1.0	1.0	335	(7) 342	-구조물및 교통안전시설 중 — 옹벽: 75M 가드레일:47M
	청성 - 심전	확 4.1 포 2.8	확 4.0 포 2.8	804	(56) 860	-추정암반선 변동:암 1,186m'중 -측구. 황배수관 : 7개소/253M 중
	목정 - 용화	확 2.7 포 1.2	확 2.2 포 1.2	1,208	(-) 1,208	설계변경 없음
	상촌 - 흥덕	확 4.7 포 2.0	확 4.7 포 1.0	1,481	(55) 1,536	-추정암반선 변동:암 2,091m' 중
	덕산 - 이월	확 3.9 포 1.3	확 3.9 포 1.7	891	(69) 960	-취락지구간 포장추가 (주민건의): L = 400M
	백곡 - 양백	포 8.4	포 8.4	272	(-) 272	-도급계약 범위내에서 불량조정

※ ()내는 증감액

(단위 : km, 백만원)

사 입 명	사 업 량		사 업 비		실 개 변경 사유 (구체적으로)		
	당 초	변 경	당 초	변 경			
2	쌍곡 - 관평	확 1.2 포 1.2	확 2.0 포 1.2	592	(-) 592	설계변경 없음	
	문평 - 관평	확 1.3 포 1.0	확 1.3 포 1.0	497	(95) 592	-추정압반선 변동: 위 5,712m' 중	
	장인 -수안보	확 0.4 포 1.5	확 1.1 포 2.9	503	(-) 503	-도급액 범위내에서 물량조정	
	원남 - 맹동	확 1.5 포 1.2	확 1.5 포 1.2	411	(34) 445	-추정압반선 변동: 암 649m' 중 -배수관: 8개소 / 82M 중	
	대소 - 맹동	확 3.0 포 0.4	확 3.0 포 0.4	438	(59) 497	-농경지 진입 중배수관및 측구추가 : 16개소 / 509M	
	감곡 - 노은	포 6.3	포 5.9	392	(35) 427	-현지여건에 부합토목 구조물조정 :11개소 / 633M 중	
	생곡 - 일죽	포 7.0	포 7.0	575	(Δ33) 542	-현지여건에 부합토목 구조물 조정 감(마무리 노선)	
	금왕 - 덕산	확 1.5	확 1.5	495	(-) 495	-설계변경 없음	
	금왕 - 울면	확 1.9	확 1.9	288	(25) 313	-추정압반선 변동:암 1,956m' 기 -옹벽, 횡배수관: 10개소 / 226M 중	
	차	양성 - 부른	교하부	교하부	4,851	(-) 4,851	설계변경 없음
북평 - 미북		포 2.0	포 2.0	476	(11) 487	-교통안전시설 추가 표지판:55개소 가드레일:100M	
백운 - 운학		포 6.8	포 8.8	570	(101) 671	-측구, 구조물 추가: 647 M -교통안전시설 추가: 95M	
이상천-가곡		확 3.8 포 4.5	확 3.8 포 4.8	726	(99) 825	-마무리구간 포장추가:L = 360M -추정압반선 변동: 암 2,536m' 중	
선		대강 - 예천	포 2.7	포 2.7	563	(-) 563	-도급액 범위내에서 물량조정
		구단양-방곡	확 4.3 포 0.7	확 4.3 포 0.7	860	(99) 959	-추정압반선 변동: 암10,253m' 감 -선택, 보조기층 추가: 14,881m'
		재천 -이상천	확 1.8 포 1.0	확 1.8 포 1.0	497	(78) 575	-추정압반선 변동:암 2,998m' 중
		이상천-벌방	확 1.5	확 1.5	281	(Δ 3) 278	-교량 철근조정

Ⅲ. 공원구역 재조정관계 정밀조사현황

1. 국립공원경계조정 및 공원계획 변경

- 본 도내 국립공원의 실태를 조사하여 3개공원(속리산, 월의산, 소백산) 3개군(괴산, 제천, 단양) 9개지의 2,947,000㎡를 공원경계 조정하고, 2개공원(속리산, 소백산) 2개군(괴산, 단양), 2개지의 335,000㎡에 대하여는 공원계획변경(자연환경지구→취락지구) 요청하여 공원내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내부부에 건의한 바, ('93. 9. 18)
- 내부부장관으로부터 공원구역변경은 대단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사안이고, 공원계획변경(자연환경지구→취락지구)은 재정밀 조사후 건의토록 지시됨 ('93. 10. 8)
- 내부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3개공원의 실태를 재조사, 2개공원(속리산, 소백산) 2개군(괴산, 단양) 7개지의 459,883㎡를 공원계획변경신청('94. 2. 8)하여 내부부장관이 검토중에 있으며

2. 월악산국립공원이 광역지정된 이유

- '84. 12. 31 월악산국립공원이 지정될 시, 국립공원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능선, 하천 또는 도로등을 경계로하여 국립공원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공원의 경계부위에 집단취락, 농경지등이 포함된것으로 사료되며
- 본 도에서는 자연공원법 개정시, 공원경계에 인접하여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거나, 농경지가 있는 경우는 공원구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 건의 ('94. 3. 15)

3. 공원내 주민의견

- 불임과 같이 주민의견을 수렴, 내부부장관에게 자연공원법 개정시 조치토록 건의 ('94. 3. 15)

□ 자연공원법령 정비과제

현행	개정 (안)	비고
<p>○ 자연공원법제16조제2항</p> <p>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안에서의 허용행위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.</p> <p>2. 자연환경지구</p> <p>3.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 시설의 설치 및 사업</p>	<p>3. 밀집하지 아니하는 동일 공원시설의 설치 및 사업</p>	<p>○ 법 해석상 문제점 해결</p>
<p>○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 (공원의 폐지등)</p> <p>8. 공원구역이 경계 또는 그 인접지에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거나, 화장장, 사격장등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</p>	<p>8. 공원구역이 경계 또는 그 인접지에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고,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과 화장장, 사격장등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공원구역으로 존치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</p>	<p>○ 공원경계에 농경지 또는 집단취락이 형성되어 있거나 사유재산권 침해로 민원야기</p> <p>○ 농경지로 이루어진 지역은 풍경이 아름다운 지역이 아님</p>
<p>○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6조의3 (자연상태의 영향) 신설</p>	<p>자연공원법제16조의3 (신설) (자연상태의 영향)</p> <p>법 제23조제2항2호에서 "자연상태에 영향"이라함은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공원계획 진입도로상에 약취 및 공원미관 저해 행위로 2. 공원내 수목, 동물의 생육에 영향을 끼칠 때 3. 자연자원의 훼손이 클 때</p>	<p>○ 법 해석의 문제점 해결</p>
<p>○ 자연공원법시행령제30조의1 (신설)</p>	<p>자연공원법시행령제30조의1 [신설] (공원내 인가, 허가)</p> <p>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 사항중 신고로 처리되는 인가,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, 군수 책임하에 인가 또는 허가하고 그 결과를 공원관리청에 지체없이 송부 한다.</p>	<p>○ 신고로 처리될 수 있는 경미한 사항도 협의 절차 이행으로 인, 허가 기간 장기화</p> <p>○ 민간사업자 불만 해소</p>
<p>○ 자연공원법시행령제30조의2 (허가에 관한 협의) 법 제30조를 제30조의 2로 변경</p>	<p>자연공원법시행령제30조의2 (허가에 관한 협의) 법 제30조를 제30조의 2로 변경</p>	<p>○ 당초 공원계획변경, 기본설계등의 인, 허가에 대하여는 본 조를 적용</p>

헌 행	개 장 (인)	비 고
<p>○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(신설)</p> <p>○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 (용도지구내에서의 행위기준)</p> <p>① 법 제16조 제2항의..... 연면적 6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로 한다.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시설과 부대시설의 경우는 연면적1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한다.</p> <p>4. 농산물, 임산물, 수산물, 축산물의 공동판매장등의 판매시설</p> <p>5. 신설</p> <p>6. 신설</p> <p>② 법제16조 제2항의..... 설치할 수 없다.</p> <p>1. 기존건축물의..... 다음 기준에 의한 증축 가. 지상층은 기존지상층 포함하여 100㎡이하</p> <p>2. 주거용건축물의 부대시설로서 연면적 30㎡이하인 부대시설의 설치</p> <p>③ 신설</p>	<p>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3조제3항 (신설) 시행령제5조8호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 변경 사항은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원구역 변경 할 수 있다.</p> <p>① 법 제16조 제2항의..... 연면적 600제곱미터이하의 규모로 한다. 다만 제5호의 슈퍼, 음식점시설은 기존건축물의 연면적내 규모로 한다.</p> <p>4. 해당지역 시장, 군수가 추천하는 농산물, 임산물, 수산물, 축산물, 토속음식의 공동판매장등의 공동판매시설</p> <p>5. 기존건축물에서의 슈퍼, 음식점등 판매시설</p> <p>6. 기존건축물에 한하여 여관, 여인숙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기존건축물의..... 다음 기준에 의한 증축 가. 지상층은 기존 지상층 포함하여 200㎡이하</p> <p>2. 주거용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연면적 66㎡이하인 부대시설의 설치</p> <p>③ 취락지구에서 주거용건축물은 건축높이 3층이하, 건폐율을 100분의60이하로 설치</p>	<p>○ 공원내 공원으로 보존치시킬 필요에 대한 실태조사용 규정화 하여 공원관리의 효율</p> <p>○ 공원지역내 주민의 사유재산권 회복 및 민원 해소</p> <p>○ 국립공원지정 이전의 공원내 기주지의 경계에 보태어 되도록하여 주민의 불편 및 민원 해소</p> <p>○ 국립공원육 찾는 탐방객의 편의 제공</p> <p>○ 공동판매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있도록 하고자 함.</p> <p>○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설치 1,000㎡가능</p> <p>○ 기존의 주택의 개, 증축을 넓게할 수 있도록하여 공원 이미지 제고</p> <p>○ 노후화되어 있는 기존의 건축물 개, 증축으로 공원환경 개선</p> <p>○ 개발제한구역내 부속건축물 66㎡가능</p> <p>○ 공원관리사무소 지침에 의거 추진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</p>

행	개 정 (인)	비 고
<p>③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규모로 한다. 6. 3층이하의 여관 및 여인숙 (읍.면.동사무소 또는 출장소 의 소재지 및 도서지역에 한 한다)</p> <p>○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7조 (기본설계의 세부기준)</p> <p>① 법제21조의.....같다. 1. 집단시설지구안에 건축물 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폐율 및 높이는 다음 각목의 기준 에 의하되, 1987년 12월 31 일 이전의 기존건축물로서 기목내지라목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100분의90이하의 범위안에서 종전의 당해 건 축물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②비공원관리청은 법 제21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관리청이 공고한 기본설계의 내용과 달리 공원사업을 하고 자 하거나공원관리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○ 자연공원법시행규칙제11조 (공원집용등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)</p> <p>1. (신설)</p>	<p>④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규모로 한다. 6. 3층이하의 여관 및 여인숙</p> <p>① 법제21조의.....같다. 1. 집단시설지구안에 건축물 을 설치하는 경우 그 대지면 적, 건폐율, 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되, 1987년 12월 31일 이전의 기존건축 물로서 기목 내지 라목의 규 정에 의한 대지면적이 적기 나, 건폐율이 초과하는 건축 물에 대하여는 기존건축물의 대지면적내, 100분의90이하 의 범위안에서 종전의 건폐 율을 적용할 수 있다.</p> <p>②비공원관리청은 법 제21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관리청이 공고한 기본설계의 내용과 달리 공원사업을 하고 자 하거나공원관리 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 기존의 공원시설로서 자연훼손의 우려가 없는 변경 은 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국 립공원관리공단 또는 도지사 가 행한다.</p> <p>1. (신설) 자연환경지구내에서의 주거 용건축물 증축, 개축, 재축 행 위가 건축법에 의한 신고사 항인 경우</p>	<p>○ 진 취락지로 화 대하여 탐방객의 불 편을 해소하고 민박 형태의 불법 숙박을 양성화</p> <p>○ 3항 신설로 4항 으로 변경</p> <p>○ 공원법 제정이 전 의 건축물로서 노후 화된 건축물을 개축 하더라도 공원법의 최소 대지면적의 규 정을 충족시킬수 없 어 건축물 개축의 어려움</p> <p>○ 기존건축물을 개 축으로 공원이미지 새신</p> <p>○ 기존의 공원시설 로서 자연훼손이 없 는 증축, 개축 사항 에 대하여는 현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여 민간인 공 원사업 시행시 불판 부담 완화</p> <p>○ 건축법상 신고로 서 갈음되는 사항을 공원집용허가를 받 도록 하고 있어 공 원관리공단과 협의 처리함에 따른 기간 장기화</p>

현행	개정 (안)	비고
<p>1. 취락지구에서의 주거용 및 농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,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. 다만, 집단시설지구로부터 300미터 이내에서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2.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. 다만, 집단시설지구로부터 300미터 이내에서 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p>3 ~ 7호</p>	<p>2. (1호를 2호로 변경) 취락지구에서 건축비상 신고사항의 주거용 및 농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</p> <p>3. (2호를 3호로 변경) 자연환경지구 및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외부를 도색하는 행위</p> <p>4~8 3호에서 7호까지를 변경</p>	<p>○ 건축물을 도색하는 행위 자체가 공환경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태이고</p> <p>○ 동일지구안에서 제한 사항이 달라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</p>

□ 공원관리 제도개선사항

현행	개정 (안)	비고
<p>○ 공원에 취락지구내 주민들 행사시(예, 경사) 공원의 지의의 친지 및 방문객 공원입장료 징수에 따른 주민 반발</p>	<p>○ 공원에 주민 행사시 공원관리사무소 신고로 당일에 한하여 행사 참여자 입장료 징수 면제</p>	<p>주민들 불만 해소</p>
<p>○ 법정도로인 지방도등을 통과하는 정기노선미스를 이용하는 비스승객들 입장료 징수에 따른 불만 및 민원</p>	<p>○ 무득허 법정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있는 통과지들을 거리 입장료 면제</p> <p>○ 입장료 징수시 매표원이 미스를 타고 다니며 징수토록하여 공원의 이익을 벗어나는 비스 이용자 면제</p>	<p>법정도로 이용자 및 주민 불만 해소</p>
<p>○ 1개공원 1개사무소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위치하지 않은 타 시, 군은 각종 인, 허가사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</p>	<p>○ 관리 분소 역활 확대로 각종 인가, 허가처리 가능토록 처리</p>	<p>주민 불편 및 불만 완화</p>
<p>○ 공원이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집단적으로 3~4채가 있으며 농경지로 이루어진 취락지역이 용도지역상 자연환경지구로 지정 되어 있음.</p>	<p>○ 기존의 취락지역을 인정, 직접 민직내에서 용도지구상 취락지구로 변경</p>	<p>주민생활 불편 완화</p>
<p>○ 공원에 취락지구는 국립공원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깨끗하고 청결하여야하나 오히려 건물이 노후되고, 생활환경이 낙후하여 공원이미지 저해</p>	<p>○ 국비 또는 교부세를 공원사업비의 주민을 위한 공원환경 개선사업비로 양분하고 주민주거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공원이미지 개선</p> <p>○ 공원계획시설에 대하여는 민자유치를 적극유도하여 공원시설 설치(공원시설별 사업 유치 공고로 사업자 선정)</p>	<p>지역개발 및 공원환경개선으로 공원에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고, 공원탐방자 및 공원에 주민이 공원으로 지정된것을 좋아할 수 있는 환경 조성</p>
<p>○ 공원에 주민은 공원이미지내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, 피해의식 팽배로 불만만 가중시키고 있으나,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적절한 홍보 및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 법 해석상 차이로 일선에서 홍보에 어려움이 있음.</p>	<p>○ 공원에서 할 수 있는 행위 및 허가기준등을 세부 지침화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원관리공단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</p>	<p>주민들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명확히 알고 생활함으로써 불만 해소</p>

IV. 중앙고속도로 건설

□ 사업 개요

- 위치 : 춘천 - 제천 - 대구 (충북 제천 봉양 - 단양 대강)
- 사업규모 : L = 280 Km (충북: 60 Km) B = 24.4 M → 4차선 진제 2차선 시공중
 - ┌ I . C : 26 개소 (충북 4개소 : 님제천, 시재천, 매포, 단양)
 - └ 휴게소 : 6 개소 (충북 1개소 : 단양)
- 사업기간 : 1989 ~ 2004 까지

□ 투자 계획

(단위 : Km, 억원)

구 분	진 체		기 투 자		'94 개 획		'95 이 후	
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	사업량	사업비
계	(60.0) 280.0	33,192	-	5,706	-	2,400	-	25,086
I 단계	(9.9) 151.0	14,535	토공 및 구조물	5,606	-	2,050	-	6,879
II 단계	(50.1) 129.0	18,657	보상	100	보상 및 착공	350	-	18,207

※ () 내는 충북구간

□ 추진 상황 (총공정 : 17.2 %)

- I 단계사업 : 151.0 Km (충북 9.9 Km) → '89 - '97까지 원공
 - ┌ '95 까지 2차선 개통예정 (공정 : 75 %)
 - └ '97 까지 4차선 원공예정
- II 단계사업 : 129.0 Km (충북 50.1 Km) → 1993 - 2004까지
 - '93 보상 및 '94 일부구간 착공 계획

□ '94 투자 계획

○ I 단계사업 (151.0 Km)	_____	2,050 억원
┌ 제천 ~ 원주 : 38.0 Km (중복 9.9Km)		500 "
├ 대구 ~ 인동 : 87.0 Km		1,150 "
└ 홍천 ~ 춘천 : 26.0 Km		400 "
○ II 단계사업 (129.0 Km)	_____	350 억원
┌ 영주 ~ 제천 : 60.7 Km (중복 50.1 Km)		150 "
├ 인동 ~ 영주 : 25.5 Km		200 "
└ 원주 ~ 홍천 : 42.8 Km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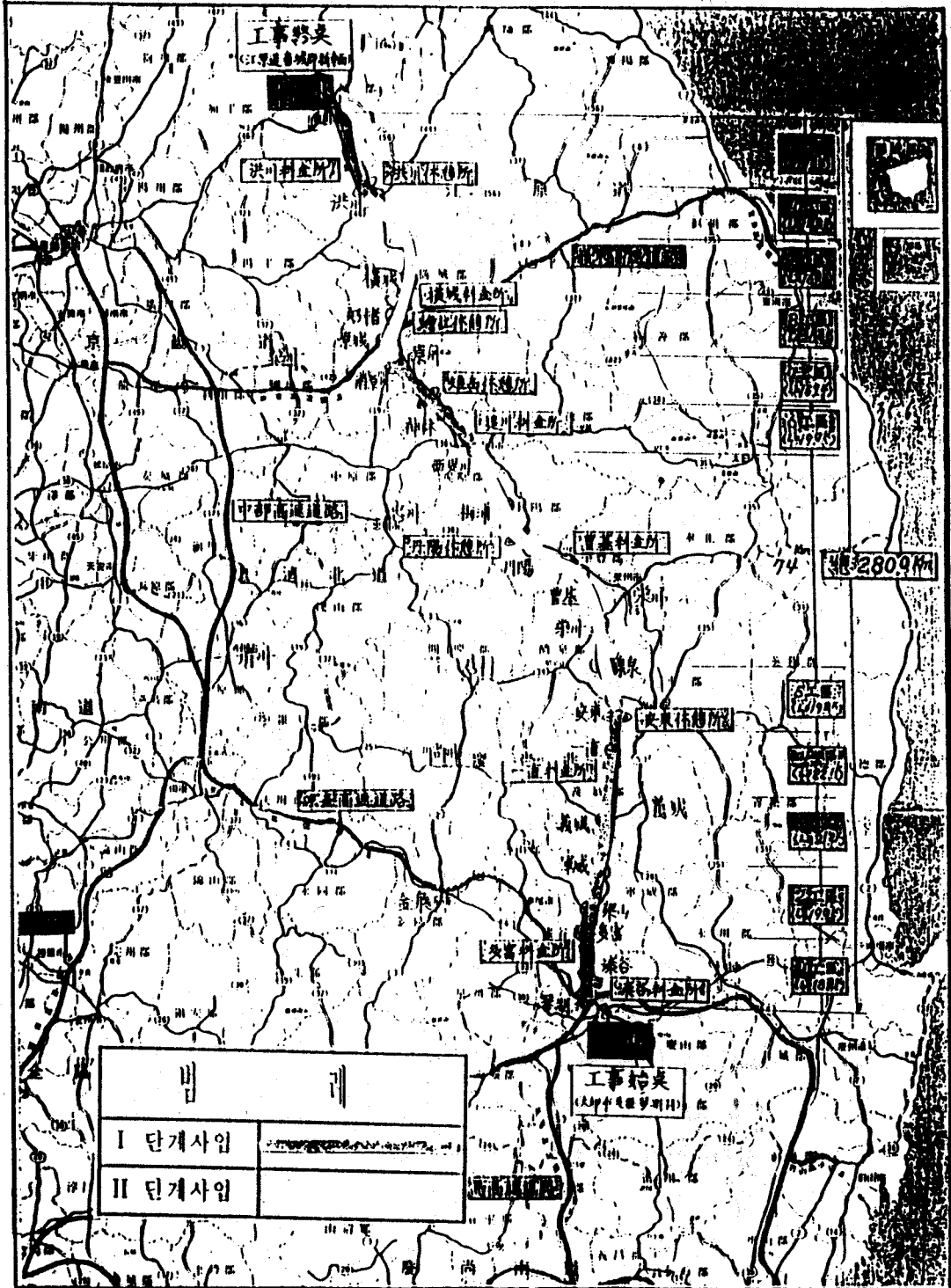
□ 완공 지연사유

- 정부예산 형편상 I 단계의 2차선 개통은 '94계획에서 '95년으로 지연
(중복 제천 ~ 원주)

□ 향후 계획

- I 단계 ┌ 2 차선 '95까지 완공
└ 4 차선 '97까지 완공
- II 단계 ┌ '93 부터 보강 착수
└ 2004 년 까지 완공

<위 치 도>



V. 부실시공 방지대책

□ 도로공사

< 현 황 >

- '93 지방도 사업 : 21개 노선 (20,291 백만원)
- '94 지방도 사업 : 25개 노선 (32,346 백만원)
- 공 사 감 독 : 16명 (2 ~ 3 건/인)

< 대 책 >

-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 기능보강 (33인 → 48인) : 완벽한 설계

(학계 31인, 일반전문가 5인, 공무원 11인)

- 위원장, 부위원장 : 2 인
- 일 반 토 목 : 20 인 (중 7인)
- 농 업 토 목 : 4 인 (중 2인)
- 건 축 분 야 : 6 인 (중 3인)
- 기 계 분 야 : 4 인
- 전 기 분 야 : 3 인
- 조 경 분 야 : 2 인 (중 2인)
- 환 경 분 야 : 3 인
- 소 방 분 야 : 2 인
- 통 신 분 야 : 1 인
- 교통 안전 시설 : 1 인 (중 1인)

○ 책임 감리제도 도입 (건설기술관리법 개정 '94. 1. 1)

- 대 상 : 50억원이상의 공사 및 주요 시설공사

- 내 용 : 시공감독, 설계변경, 준공검사등 전면책임감리

※ 부분 책임관리 확대 실시 : 교량, 터널등 주요공사

○ 공사감독 강화를 위하여 최대한 현장 상주

- 공사관련 계획업무는 주무 6급이 담당토록하고

- 감독공무원은 공사감독에 전념토록 시간배려

- 공사 단계별 감독요령 숙지 활용 (현장사무실에 비치)

- 주요구조부 시공시 감독입회 철저 시공

(기초, 철근배근, 콘크리트타설, 아스콘포설등)

○ 각종자재 검수철저

- 반입자재 품질확인

- 선정, 관리 및 검사시험 확행

(특히 선정시험은 공사감독이 직접시료채취)

○ 주민의견 청취

- 공사 착공시 시공구간 거주주민 설명회 개최

(주민의견수렴, 민원사전해결)

○ 명예를건 책임의식 고취

- 공사내용에 대하여 건설업체, 설계자, 감리자, 시공기술사, 명단 영구부착

(공공사업의 경우 30억 이상 및 교량등 주요 구조물)

○ 부실시공방지 교육실시

- 대상 : 각현장의 현장대리, 관계직원 및 책임기술자

- 일시 : 착공전, 중요공사 시공전

- 내용 : 모든 구조물의 기초, 주요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기능과

토목구조물의 수명이 곧 행정의 경영과 일치되도록 정신교육

□ 하천공사

<부실시공 방지대책>

1. 의식 개혁

- 현장대리인 및 현장 관련 종사원 교육
 - 공사관리, 품질관리, 안전관리 철저
 - 설계도면 및 시방서와 일치 시공
 - 매물 혹은 사후검사가 어려운 부분은 촬영 비치
- 감독 공무원의 책임감독 의식과 사명감 고취

2. 품질관리 철저

- 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 적합성 확인 (돌망태, 조약돌, 철근, 철선, 사석 등)
- 호안블럭 5,000매당 공사감독 지참 압축강도 시험 (도로관리사업소)
- 레미콘 150m³당 공사감독이 직접 공시체 제작 압축강도 시험 (도로관리사업소)

3. 시공관리 철저

- 호안블럭 철선 규격확인 및 이음 철저
- 호안 기초공은 블럭붙임전에 물푸기틀 철저히하여 규격시공
- 사석은 규격품 사용 (개당 60~70 kg)
- 때는 규격때 시공 (털때 사용금지) 과 물주기, 잡초제거 등 사후관리 철저
- 주요 구조물 시공 입회 (터파기, 철근조립 등)
- 우기전 하상정리로 수해예방

VI. 설계, 감리비 인상내용 현황

□ 건축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 및 보수 기준은 건축사협회가 건설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 정하도록 되어있음.

< 내 용 >

- 건설부장관은 '93년도 정부예산 편성기준 적용표에 의거 재부부와 협의하여 보수기준을 '93. 12. 31인가 하였습 (건설부 공고 제1993 - 227호 '93. 12. 31.)
- 개정 요지는 감리비를 현실화하여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에서 부터 공사현장의 시공 및 품질관리까지 책임을 부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건실한 건축물을 건축토록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인간비용을 감안, 전문가들이 인구 심의하여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을 정한것으로 현재 물가상승율을 감안함때 영세한 주민의 건축비 부담이 과중 되었으나 불가피한 실정임
- 개정된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에 의하면 연면적 200㎡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 설계, 감리비를 산정하여 종전과 대비 130%정도 인상되었습
- 이의시정을 위하여 건설부에 ('94. 2. 28 주택58570-258호)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을 제검토 건축설계, 감리비가 인하조정 될수 있도록 건의하여 인하할수 없음을 따로 불임과 같이 회신 되었습 (건설부 건행 58570 - 218, '94. 3. 11)

※ 건축 설계, 감리비 비교표

(단위 : 평당/원)

구	분	설 계 및 감 리 비				
		개 정 전	개 정 후	증 감	비 율	
	200㎡ (60평)					
1	종	조적조	28,000	90,700	62,700	220 %
2	종	조적조	51,400	118,600	67,200	130 %
		라멘조	74,200	172,000	97,800	130 %
3	종	조적조	66,900	150,400	83,500	125 %
		라멘조	90,500	208,800	118,300	130 %

VII. 행정규제완화사항 ('94. 3. 5건설부건의)

가. 공업단지 지정승인

< 현행 >

- 행정절차 이원화로 처리지연
· 공업단지 지정승인 : 개별법에 의한 협의 및 승인
· 국토이용계획 변경 : 개별법에 의한 협의 및 변경결정

< 개선안 >

- 행정절차 간소화
· 국토이용관리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공업단지 지정 승인시 국토이용계획 변경된것으로 의제 처리

나. 창업사업계획 승인

< 현행 >
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에는 사업계획 승인시 토지거래 허가신고를 받은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신고 미적용 규정없음.

< 개선안 >

-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동사항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신고 규정 미적용토록 개선 요망

다. 개별입지지정승인

< 현행 >

- 개별입지지정승인후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, 동법 제21조의7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 허가 신고를 받도록 되어있음.

< 개선안 >

-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개정하여 동사항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 신고 규정 미적용토록 개선 요망

라. 개별공장입지지정승인

< 현행 >

- 행정절차 이원화로 처리지연
· 개별공장입지 지정승인 : 개별법에 의한 협의 및 승인
· 국토이용계획 변경 : 개별법에 의한 협의 및 변경결정

< 개선안 >

- 행정절차 간소화
· 국토이용관리법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개별공장입지지정 승인시 국토이용계획 변경된것으로 의제 처리